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김민전 · 서천호 · 김예지
김대식 · 안철수 · 김미애
정성국 · 나경원 · 김용태
강선영 · 박수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.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2항 신설).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을 제1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입학전형의 방법”을 “그 밖에 입학전형의 방법”으로 한다.

②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응시하려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34조(학생의 선발방법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 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~ ⑬ (생 략)	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34조(학생의 선발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 람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응시하려는 사람의 귀책 사유가 아닌 전산장애나 그 밖 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⑭ 그 밖에 입학전형의 방법-- ----- -----. ③ ~ ⑬ (현행과 같음)